

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)



**행정재경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14호
- 나. 제출자 : 정재동 의원, 고영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3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3. 10.

## 2. 제안이유

코로나19 장기화, 극심한 경기침체로 등으로 매출 감소 및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적용 대상 범위 규정 신설(제2조의2 신설)
- 나.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 신설(제5조의3 신설)

## 4. 관계법령
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
-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」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적용범위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써
-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소상공인기본법

[시행 2021. 3. 9.] [법률 제17623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창업촉진 및 성장)**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·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

야 한다.

**제14조(판로의 확보)**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디지털화 지원)**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, 전자결제 시스템, 스마트·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사업장 환경의 개선)**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경영안정의 지원)**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)**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)**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, 취업,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공제제도의 확립)**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,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(共濟)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「보험업법」을 적용하

지 아니한다.

**제29조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**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

**제8조(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)** ① 시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·발전을 위한 시책(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)
2.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, 노동환경 개선,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책
3.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
4.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를 위한 시책
5.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 활성화

화를 위한 시책

6. 소상공인의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,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
7.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
8. 소상공인의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시책
9.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시책
10.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, 장비, 시스템, 서비스 등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11.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한 시책

**제9조(소상공인 보호)**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
2.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호협력 촉진에 필요한 시책
3.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분야·장소·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

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

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

2.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, 취업,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(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서울시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)

3.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시책

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